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The Economic Status and Inequality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후 연구원 성지미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이윤정

Dept. of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Post-Doc. : Jai-mie Sung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h.D. Candidate : Yoon-Jung Lee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Using the 1996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tatus and the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To explain the inequality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this study divides the elderly into three groups of singl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 children, and compares the total household incom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net saving amount of these three groups. The results of Gini coefficients and Lorenz curves show that the inequality is higher in the single elderly household than couple elderly households 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elderly households. To investigate the reason of the inequality, this study compares the income, expenditure, and net saving amount by working condition of the household head in each three group. The result implies the need of employment to get household income especially for the single elderly who are in the higher inequality economic condition.

주제어(Key Words): 노인독신가구(single elderly households), 경제상태(economic status),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

I. 서 론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와 관련된 중요한 추세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노인인구의 변화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 한편으로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통계청(1996b)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970년 전체인구 중 3.1%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연령층은 1999년 6.8%로 증가하여, 이 추세는 계속되어 2010년경에는 10%인 500만 명 정도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화지수 역시 1970년 7.2에서 1999년 31.4, 2010년경에는 50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둘째는 가족구조의 변화로서, 노인부양은 과거의 가족부양(family care) 체계에서 자기부양(self care)과 국가부양(public service)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끼리 생활하는 노인단독세대는 1998년 현재 46.8%로써, 14년 전에 비해 24.2%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0.3% 정도(정경배, 1999)로 가족내의 노인부양기능이 축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동거형태의 분리는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부양에서의 자립과 연결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노인세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의식의 부족과 더불어 열악한 금융시장 구조 속에서 은퇴를 맞아, 은퇴후 기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연령층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와 회사차원의 연금보조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맞물린 의료수가 상승으로 노인연령층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혜택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연간소득(1,319만원)은 모자가구의 연간소득(1,175만원)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고(통계청, 1996a), 1997년 현재 소득과 자산의 상태로 선정되었던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3.1%인데 비해 65세 이상 총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8.3%로 2.7배에 달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1998). 1997년 현재, 55세 이상된 노인인구 중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6% 정도였고(통계청, 1998) 경제활동참가율은 49%로 파악되어(방하남·안주엽·장지연·박은경·호정화·정혜원, 1999)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의 상황은 소득을 벗어들일 수 있는 취업상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은퇴 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세대를 위해 경제적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현행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최저생계수준으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 특히 노인독신가구의 경제 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을 노인독신가구로 선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노인독신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화추세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상 중요한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독신가구를 대상으로 지출을 분석하게 되면, 노인이 자녀세대와 동거 할 경우 노인을 위한 지출액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혼자 주거하는 형태인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 함께 주거하는 형태인 노인부부가구, 그리고 노인이 배우자, (손)자녀 및 다른 가족원 또는 타인과 거주하는 형태를 자녀동거노인가구로 정의하여 각 노인가구 집단의 경제상태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경제상태를 소득, 지출, 저축, 부채 및 순저축액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 자녀동거노인가구와 비교한다. 둘째,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경제적 불평등도를 소득, 지출, 그리고 순저축액으로 측정하고 이를 자녀동거노인가구와 비교한다. 셋째, 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정책상의 개선점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부조(생활보호대상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자산, 최저생계비 산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비지출액을 노인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순저축의 경우, 양의 값을 갖는 가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음의 값을 지니게수와 로렌츠 곡선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제약점 뿐 아니라 양의 값을 갖는 가구만으로도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니게수를 이용해 경제적 불평등도를 측정한 선행연구(허드와 쇼우븐(Hurd and Shoven), 1983) 역시 순자산이 양의 값을 갖는 가구만을 연구의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가구의 부양체계와 경제상태 및 경제적 불평등

부양체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노인가구는 1998년 46.8%로 파악되고(정경배, 1999),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부모의 생계부양(financial support for parents)을 자식이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17%정도였으며, 60세 이상의 대졸이상인 학력을 갖는 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아 50%정도에 이르고 있었다(통계청, 1998). 이러한 실태는 노인들의 생계부양형태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노인의 생활실태조사를 사용한 김과 이(Kim and Rhee,

1999)의 선호하는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1,840명 노인 중 51.3%가 개인부양, 즉 노인단독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7.9%가 정부 차원의 국가부양을, 30.8%는 가족 또는 자녀의 부양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에 의하면 교육수준, 자산상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성의 정도가 선호하는 부양체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를 마친 응답자의 경우 자녀부양에 비해 개인부양이나 국가부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노인은 자녀부양에 비해 개인부양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개인부양보다는 자녀부양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나아가 경제상태, 건강상태 그리고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선호는 또 달라진다(김혜연·김성희, 1999). 즉, 독립된 동거형태에서 경제상태 또는 건강상태의 도움을 자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동거형태는 노인단독가구로 유지하면서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 또는 신체적인 도움을 받는 양상으로 바뀌거나 변하게 된다.

또 다른 분석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60%정도였고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9%정도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장남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었다(김의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 1999).

이처럼 노인의 경제상황과 건강상태는 부양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개인이나 가족부양체계를 통해서 충분한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국가부양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경제상태. 이와 같은 주거의 분리현상 즉, 개인부양의 선호 증가는 경제적, 신체적인 부양을 포함하는 부양형태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거에서의 분리가 경제적 부양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노인가구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노인가구는 아직 연금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주된 소득원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 1999; 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변용찬·문현상, 1998). 따라서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부양에 관한 통계는 경제적 부양의 여부와 정도, 그리고 조사표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직업을 통한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주된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자녀의 경제적 부양마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어려운 상태로 파악된다. 박재간·모선희·원영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식생활(36%), 의료비(30%)와 주택임대료 및 관리비(21%)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가 및 개인적 활동에는 생활비 지출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없거나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3%이며, 20~59만원은 32.1%, 60~99만원은 16.8%로 노인단독가구의 약 62%정도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노인단독가구를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로 구분할 때, 노인독신가구의 월 평균 소득수준이 노인부부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 보다 낮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 이하인 비율이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약 90%에 이르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약 71% 정도였다. 이에 반해 자녀와 동거하는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 이하인 가구가 약 17% 정도에 불과했다.(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변용찬·문현상, 1998).

경제적 불평등. 허드와 쇼우븐(Hurd and Shoven, 1983)은 미국의 은퇴역사조사(Retirement History Survey)를 이용하여 1969년 당시 58세에서 63세였고 1975년 당시 64세에서 69세였던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을 측정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인독신가구는 노

인부부가구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지니계수도 커서 1968년에서 1969년까지 62세 또는 63세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의 소득불평등의 정도(지니계수 0.462)는 노인부부가구(지니계수 0.380) 또는 자녀동거 노인가구(지니계수 0.440)의 불평등의 정도에 비해 크게 나타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62세 또는 63세의 연령층에 이미 은퇴한 사람과 은퇴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어 이로 인해 불평등의 정도가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직업의 유무가 소득 불평등정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함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가계의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의 불평등도 분석을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경우 모두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어 편포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니계수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지출보다는(0.452, 0.376) 자산 및 부채의 경우(0.580, 0.628) 불평등정도가 다소 더 심하고 지니계수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보다 잘 나타내는 지표는 지출이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저량의 의미인 총자산의 경우가 경제적 복지의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2.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현재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적 측면, 건강보장적 측면, 복지서비스적 측면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세 가지는 결국 노인의 경제적 측면인 소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은 공공부조, 국민·특수직역연금, 경로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노인고용정책, 경로우대제도 등의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들 수 있는데, 1998년 현재 전체 노인 중 2.6%정도가 생활보호제도를 통하여 공공부조로 소득수준

에 따라 1인당 월 5만4천원~15만2천원으로 차등 지급 받고 있으며, 자활보호 및 한시적 생계보호 노인은 월 7만9천원을 지급 받고 있다. 연금수급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2%정도가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 4.3%정도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특수직역연금을 수급받고 있다(최성재, 1999).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조나 공적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상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총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소득의 60%이하이고, 재산기준이 생활보호법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이하인 노인가구이다. 급여수준은 65-79세에게는 월 4만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노인은 2만원을 지급하되 부부 수급시에는 한 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5조).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최근 이를 개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18세- 60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도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재산과 소득,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근로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 형태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1981년부터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해오다가,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하여 1999년 현재 70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월 4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 인재은행을 운영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60개의 '고령자 적합 직종'을 선정해 이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 밖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는 1980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는데, 현재 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

거나,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무료이용과 철도 할인을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이외에는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세제혜택, 노부모 봉양수당,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등이 시행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의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6년 10월1일에서 11월 30일까지 통계청에서 조사·실시된 가구소비실태조사이다. 조사방법은 1992년 7월 1일 현재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각 도의 시 및 군부로 구성된 24개 지역별로 각각 조사구역 명부를 작성하고, 각 지역별 표본 조사구역에 따라 크기의 척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표본의 조사구역을 만든 후, 각 표본의 조사구역에서 가구수가 균등하도록 크기의 척도와 같은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이 중 3개의 인접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조사구역에서는 구역 내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24개 지역별 표본 추출율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지역별 자체 가중평균이며, 표본 가구는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가구수로 32,280가구가 표본이 되어, 이 중 농가와 조사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구는 24,290가구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적 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 중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9,314가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5세 이상을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며, 또한 55세는 조기정년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본을 3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노인독신가구의 특징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즉, 하위집단은 가구주가 55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노인독신가구 2,194가구로 선정하고 가구주가 55세 이상이며 부양가족 없이 부부가 동거하는 2,540가구를 노인부부가구로 분류하였으며 가구주가 배우자, (손)자녀 및 기타 타인 등 2세대 이상이 동거하는 경우를 자녀동거 노인가구로 정의하여 4,580가구를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다. 경제적인 특성 파악에 있어서는 표준편차가 큰 관계로 분포의 이해를 돋기 위해 중앙값을 같이 제시한다. 각 노인가구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변수가 명목변수 및 서열변수인 경우 χ^2 (카이스퀘어) 검증을 시행하고, 연속변수인 경우는 F 검증을 시행하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세 노인집단의 경제상태 비교는 모두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연속변수이므로 F 검증으로 통계적 유의도에 대해 검증하고, 취업노인가구와 비취업노인가구의 경제상태 비교는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이므로 t-test를 거쳐 두 집단의 통계적인 유의도 검증을 시도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측정을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구하고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다. 선드럼(Sundrum, 1990)은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의 순서로 차례로 나열하고 정사각형의 수평축에 사람의 누적비율을, 수직축에는 전체소득 중의 점유비율을 누적비로 표시하여 일정비율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체소득 중의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을 모아 놓은 곡선이다. 정사각형의 원점에서 시작되는 45° 의 대각선은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된 경우를 나타내는 선으로, 도출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소득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지니계수의 값이 0에 가까우므로 평등함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해짐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지니계수} = \frac{1}{2\mu} \frac{\sum |Y_i - Y_j|}{N(N-1)}$$

Y_i 와 Y_j 는 한 사회 안의 각 사람의 소득액, N은 한 사회의 인구수, μ 는 소득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각각의 구성원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임의의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의 격차를 계산하는 것이다(이준구,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식적 원리를 따르면서 추정의 편리성을 위해 로렌츠 곡선과 관련된 면적의 비율을 통하여 그 값을 구하였다. 이같이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Index) 중 하나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초승달 모양의 넓이를 대각선 아래 삼각형 넓이로 나눈 것과 그 값이 같다. 그러므로 지수(Index)에는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하며, 지수 자체가 상대적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검증이므로 지수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

3. 경제상태 및 경제적 불평등의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가구의 연간 총지출, 가구의 누적된 총저축, 총부채를 측정하였고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가구의 연간 총지출, 가구의 누적된 총저축과 총부채의 차액인 순저축액을 측정하였다. 현행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에는 가구의 총소득과 순자산이 사용되고 있고 수급액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설정시 가구의 총지출이 이용되기 때문에 총소득과 총지출, 순저축액을 측정한다. 본 연구가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가구의 연간 총지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되며, 가구의 연간 총지출에는 의식비를 포함한 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이 포함된다. 가구의 소비지출의 분석에 있어서 통계청의 자료는 한 달을 단위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2를

곱하여 연간 총지출액으로 환산하였다. 지출액은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된 결과를 사용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각 집단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유의도 검증을 통

<표 1> 조사가구의 일반적 특성

(N=9,314)

변수명		유형		노인독신가구(2194명)		노인부부가구(2540명)		자녀동거 노인가구(4580)		χ^2
		명목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자	1,980	90.2	270	10.6	1,098	24.0	3,482	76.0	3801.71****
	남자	214	9.8	2,270	89.4	3,482	76.0			
연령	55-59세	328	14.9	732	28.8	2,460	53.7			1941.91****
	60-64세	416	19.0	702	27.6	1,318	28.8			
	65-69세	444	20.2	500	19.7	472	10.3			
	70세이상	1,006	45.9	606	23.9	330	7.2			
학력	무학	1,206	55.0	330	13.0	524	11.4			2083.04****
	초등졸	672	30.6	756	29.8	1,390	30.3			
	중등졸	148	6.7	438	17.2	832	18.2			
	고등졸	118	5.4	626	24.6	1,152	25.2			
	초대졸이상	50	2.3	390	15.4	682	14.9			
배우자	있음	0	0	2,540	100.0	3,600	78.6			5885.06****
	없음	2,194	100.0	0	0	980	21.4			
직업	있음	628	28.6	1,502	59.1	3,514	76.7			1440.58****
	없음	1,566	71.4	1,038	40.9	1,066	23.3			
세대구분	1세대	2,194	100.0	2,540	100.0	0	0			9314.00****
	2세대	0	0	0	0	3,670	80.1			
	3세대	0	0	0	0	876	19.1			
	4세대이상	0	0	0	0	34	0.7			
지역	시부	1,312	59.8	1,884	74.2	3,918	85.5			584.19****
	군부	882	40.2	656	25.8	662	14.5			
주거점유형태	자가	1,300	59.3	2,012	79.2	3,596	78.5			392.99****
	전세	434	19.8	294	11.6	636	13.9			
	기타	460	21.0	234	9.2	348	7.6			
연속변수		Mean	SD	Mean	SD	Mean	SD	F	값	
가구원수(명)		1	0	2	0	3.6	1.18	8245.81****		
연령(년)		68.43	7.88	64.58	7.02	60.47	5.29	1174.12****		
학력(년)		6.91	3.31	9.73	3.77	9.66	3.81	236.35****		

자료 :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 p<.001

해 그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집단간 특성의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직업유무, 세대구분, 지역, 주거점유형태, 가구원수, 평균연령, 평균학력에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경우, 노인독신가구는 2,194가구, 노인부부가구는 2,540가구로서 자녀동거 노인가구(4,580)와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50.8%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노인가구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75%이상인 반면 노인독신가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대략 90%정도로 대부분의 경우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더 높아 배우자 사망후 미망인이 된 여성노인수가 더 많게 됨을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가구주의 연령분포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가구주가 여성인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70세 이상이 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서의 70세 이상인 비율은 약 24%와 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평균연령도 노인독신가구의 평균연령(68.4세)이 노인부부가구(64.6세)와 자녀동거노인가구(60.4세)에 비해 높다. 학력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의 교육연수는 평균 7년 정도로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교육연수인 평균 10년에 비해 짧고,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86%를 차지하는데 반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대졸 이상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서는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 취업비율은 77%인 반면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29%으로 자녀동거노인가구와 노인독신가구가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소득원을 나타내는 소득과 지출,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상태를 분석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주거점유형태에서는 자가의 소유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독신(59%)에 비해 노인부부

와 자녀동거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둘 모두 약 7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의 군부거주비율(40%)이 노인부부가구(26%)와 자녀동거 노인가구(15%)에 비해 높았는데 자녀동거노인가구의 2배 이상임이 파악되었다.

IV. 연구결과

노인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을 살펴본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 세 집단은 경제적 상황에 있어 동질적 집단이 아님이 증명되었고, 경제적 불평등에 있어서도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모두 이들의 불평등한 정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집단별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경제상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경제상태

1) 총소득과 총지출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연간 총지출 및 각각의 세부항목에 관한 가구별 평균과 중앙값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가구별 연간 총소득과 세부항목을 비교해 보면, 총소득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세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총지출에서는 주거비와 개인교통비 항목을 제외한 소비지출액의 세부항목인 식비(의식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모두 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도로 검증되었다. 또한 비소비지출에서도 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총소득에서는 노인독

〈표 2〉 노인가구의 연간소득과 연간지출

(단위: 천원, N=9,314)

	노인독신가구(2194명)				노인부부가구(2540명)				자녀동거 노인가구(4580명)				F값 ¹
	평균	S.D.	중앙값	N	평균	S.D.	중앙값	N	평균	S.D.	중앙값	N	
총소득 ²	5951.1	14994.0	4000.00	2194	16089.4	18029.8	11900.0	2538	26161.3	19397.4	22140.0	4574	962.20****
근로소득****	5265.7	5499.6	4500.00	534	13408.8	11823.5	10100.0	1112	20797.5	14294.2	18000.0	3410	394.74****
사업소득****	5721.2	4569.0	4800.00	192	18643.1	26396.1	13800.0	606	19485.9	20706.7	15000.0	1522	34.96****
부업소득	561.3	548.4	390.50	184	1108.7	1418.1	600.0	212	1216.5	1532.7	650.0	410	15.59****
재산소득****	3502.1	6229.6	1680.0	734	6031.2	10703.4	2760.0	1158	5667.9	9521.4	2400.0	1694	18.31****
이전소득****	2813.6	2603.7	2400.0	1874	4760.5	5353.6	3000.0	1556	4904.3	5130.2	3503.5	1832	123.77****
총지출	5248.7	10018.7	3217.2	2194	13650.7	16468.5	9098.0	2540	19555.3	23017.0	14422.1	4580	428.06****
소비지출 ³	4458.8	7354.8	2962.8	2194	11245.4	12027.8	8064.8	2540	17126.3	20047.5	12806.3	4580	488.06****
식료품****	1310.8	1571.9	934.4	2179	3238.9	3436.4	2507.1	2540	4817.3	4261.3	3964.9	4580	726.54****
외식비****	339.0	597.5	120.0	738	958.3	2314.4	420.0	1602	1797.3	3192.0	1104.0	3936	113.06****
주거비****	1421.3	3222.6	664.7	621	1378.2	4423.8	4591.1	995	1618.0	6673.9	432.1	1702	0.69
광열수도*	486.4	668.2	222.0	2175	820.4	803.4	527.5	2530	925.8	829.0	623.2	4559	231.49****
가구집기/가사용품****	359.3	2373.6	60.0	1461	611.3	2791.6	131.6	2050	869.8	4605.0	176.4	3993	10.37****
피복신발****	424.9	1201.4	180.0	1083	1027.9	2107.0	384.0	1645	1789.5	3418.3	816.0	3779	111.95****
보건의료****	574.9	1739.1	156.0	1555	1339.5	3031.2	432.0	2122	1037.6	2094.6	363.6	3773	48.03****
교육비****	57.0	112.1	12.0	79	243.8	948.9	18.0	237	1352.9	1991.4	643.2	2024	52.10****
교양오락****	169.0	1125.4	30.0	1822	483.7	2015.5	72.0	2436	785.3	2599.5	192.0	4505	53.39****
교통통신****	289.0	521.5	175.6	2079	951.1	2173.5	4522	2534	1812.2	5471.9	1123.4	4573	110.26****
개인교통****	1350.9	1929.6	336.00	39	1530.9	3530.3	910.8	644	2107.3	8238.9	1200.0	1875	1.64
기타소비지출****	1094.1	4591.7	409.20	2005	3004.4	5162.5	1728.0	2482	4574.8	10942.8	2664.0	4522	119.77****
비소비지출	1426.4	6523.8	148.56	1215	3000.7	10095.4	623.0	2036	2653.9	8642.4	948.2	4192	12.96****

자료: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¹ 각 항목의 평균값에 대해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유의도 검증.² 총소득의 세부항목 응답비율이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유의도 검증.³ 소비지출의 세부항목 응답비율이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유의도 검증.

*p<.05, ***p<.001

신가구의 평균이 가장 적어 595만원이고 노인부부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609만원으로 자녀동거노인가구의 연간 총소득 2,616만원에 비해 노인독신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1인당 총소득으로 보면 노인부부가구는 804만원,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729만원으로 노인독신가구가 가장 적고,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F=29.45****, p<.001$).

소득의 원천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는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노인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고 이에 반해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

신가구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24%에 불과한데 비해, 이에 해당하는 비율로 노인부부가구는 44%, 자녀동거노인가구는 74%로 응답율이 높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chi^2=1656.53****, p<.001$). 이전소득의 경우,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독신가구는 전체노인 독신가구 중 85%에 해당하며 해당가구의 연평균 이전소득은 노인독신 전체가구의 연간 총소득의 50%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40%이며 이전소득이 전체 연간 총소득의 19%인 자녀동거노인가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chi^2=1277.06****, p<.001$). 이전소득의 구성비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미비하지만 성인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으로 받는 경제적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간주된다.

노인가구별 연간 총지출과 그 세부항목 역시 주거비와 개인교통비를 제외하고는 각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간 총지출을 비교해 보면 노인독신가구는 524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365만원,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1,955만원으로 노인독신가구가 가장 적지만 소득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즉, 노인독신가구는 소득의 88%, 노인부부가구는 소득의 85%,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75%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F=11.36^{****}$, $p<.001$).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 외식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와 같은 항목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의 지출액은 노인부부가구의 지출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 뿐 아니라 여가와 관련된 지출에도 제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비용(134만원)은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지출비용(104만원)보다 많아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평균가족수가 3.6명인 것을 고려할 때,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관련된 지출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해석해 볼 수 있다.

2) 총저축과 총부채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노인가

<표 3> 노인가구의 저축과 부채

(단위: 천원, N=9,314)

	노인독신가구(2194명)				노인부부가구(2540명)				자녀동거 노인가구(4580명)				$F_{\text{값}}^1$
	평균	S.D.	중앙값	N	평균	S.D.	중앙값	N	평균	S.D.	중앙값	N	
총소득 ²	7168.8	21871.0	1500.0	1814	20531.7	43145.1	7600.0	2358	20963.2	34225.2	10690.0	4438	109.87****
은행권저축(요구불)****	1792.9	3568.2	800.0	1652	4012.5	7570.7	1860.0	2116	4208.0	14608.4	1750.0	3966	28.19****
은행권저축(저축성)****	13552.6	25308.1	4520.0	420	17585.9	35782.7	6936.0	1138	11485.4	19003.1	5600.0	2854	24.27****
비은행권 저축/신탁****	16619.9	49575.1	2632.0	154	15987.9	27124.1	5762.0	466	15386.9	20053.6	6000.0	904	0.15
보험권저축****	3217.2	4386.6	1500.0	202	4601.6	6734.6	2500.0	710	4790.0	7981.5	2340.0	2142	4.05*
유가증권****	3088.2	2878.4	2955.0	20	26748.1	62918.1	5000.0	110	14061.3	52120.9	3000.0	308	2.91
계불입금****	2246.5	2743.9	1095.0	156	3505.7	5696.2	1595.0	460	3964.1	6065.1	1836.0	1270	6.53***
빌려준 돈****	3917.7	6901.3	1000.0	186	16684.2	54031.3	5000.0	278	15625.2	20555.2	10000.0	642	11.45****
총부채액 ³	6269.5	18520.0	1628.0	390	8515.4	28527.6	4260.0	984	10304.6	17240.1	5000.0	2550	7.73****
은행권 부채****	6877.9	6648.2	5000.0	120	9586.5	37267.4	5000.0	526	11215.2	18818.1	5800.0	1234	2.12
비은행권 부채****	19018.8	23753.4	9900.0	32	12992.3	15036.8	8250.0	88	11745.3	13064.0	8000.0	346	3.80*
보험권 부채****	1350.0	410.6	1200.0	8	7004.8	4127.8	6000.0	42	6598.1	6855.7	4500.0	144	2.88
빌린 돈****	5525.0	17504.9	1100.0	128	47202	5851.9	2800.0	192	6099.5	7613.2	3000.0	520	1.50
계단 돈****	6317.2	5508.1	4000.0	36	8443.3	8271.8	5000.0	82	7909.0	8854.8	5450.0	280	0.79
할부/외상잔액****	4382.2	699.3	2400.0	150	863.6	13780	3405	348	1545.6	2996.7	600.0	1318	18.49****
순저축액 ⁴	4812.7	21432.3	600.0	2194	15761.6	42025.4	4811.5	2540	14575.9	35754.0	6440.0	4580	72.35****
순저축액 ⁵ ***	7132.8	22375.4	1378.0	1682	21343.3	43714.9	8100.0	2038	21350.0	36045.0	10715.0	3620	101.85****

자료: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¹ 각 항목의 평균에 대해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유의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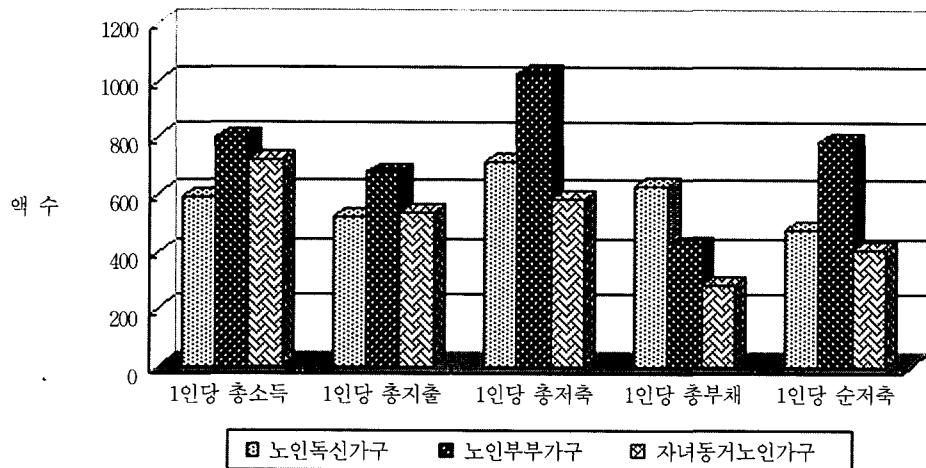
² 총저축의 세부항목 응답비율이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유의도 검증.

³ 총부채의 세부항목 응답비율이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유의도 검증.

⁴ 순저축 = 총저축보유액 - 총부채액

⁵ 양의 순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비율이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유의도 검증.

* $p<.05$, ** $p<.01$, *** $p<.005$, **** $p<.001$



<그림 1> 1인당 소득과 지출 & 저축과 부채

구의 총저축 보유액과 총부채 및 각각의 세부항목에 관한 가구별 평균과 중앙값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가구 세 집단의 총저축액과, 총부채액, 순저축액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세부 항목으로, 총저축에서는 은행권저축(요구불), 은행권저축(저축성), 보험권 저축, 계불입금, 빌려준 돈에서 세 집단간의 유의도가 검증되었고, 총부채에서는 비은행권 부채, 할부 및 외상잔액에서 집단간 유의도가 검증되었다.

노인독신가구의 총저축액(717만원)과 총부채액(627만원)은 노인부부가구(2,053만원, 852만원)와 자녀동거 노인가구(2,096만원, 1,030만원)에 비해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총저축액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독신가구는 717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027만원으로,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582만원에 비해 노인부부가구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 많은 액수를 나타냈다($F=54.76^{****}$, $p<.001$). 1인당 총부채액은 노인독신가구가 627만원으로 노인부부의 426만원,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286만원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F=22.69^{****}$, $p<.001$).

총저축 보유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요구불 은행권저축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서 가장 높아 전체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87%정도가 요구불 은행권 저축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수치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83%, 노인독신가구의 경우는 75%였다($\chi^2=134.60^{****}$, $p<.001$). 그 외에는 주로 저축성 은행권 저축, 보험권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험권 저축의 경우 노인독신가구는 그 수의 9.2%가, 노인부부는 28%가,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47%가 해당되어 위험 및 노후를 대비한 준비는 비교적 평균 연령이 낮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된다($\chi^2=986.75^{****}$, $p<.001$).

총부채액은 비은행권 부채, 할부 및 외상잔액에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고, 각 집단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세 집단 모두 은행권 부채, 빌려준 돈, 할부 및 외상잔액의 경우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순저축액에서는 노인독신가구가 481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 1,576만원과 자녀동거노인가구 1,458만원에 비해 가장 낮지만, 이를 1인당 순저축액으로 비교하면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405만원, 노인독신가구는 481만원, 노인부부가구는 788만원으로 자녀동거 노인가구가 그 액수의 규모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F=46.31^{****}$, $p<.001$). 이러한 실태는 경제적 상태가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혜연·김성희(199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비교적 경제적 상태가 나은 노인부부인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경제적 불평등도

1) 총소득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연간 총소득의 점유비율과 지니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총소득 분포를 10분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최하위 10%는 2%, 최상위 10%는 약 63%를 보유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약 29.9배 소득을 지니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최상위 10%가 67%, 최하위 10%는 1.8%를 보유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37배 소득을 갖고 있으며, 자녀동거노인가구는 최상위 10%가 74%, 최하위 10%가 약 1.9%를 보유

하고 있어 역시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38.9배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동거노인 가구의 소득부분에서 극단적인 현상,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른 집단보다 심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노인독신가구의 지니계수는 0.3967이며 노인부부가구의 지니계수는 0.3825로서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지니계수인 0.3239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자녀동거노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 이는 1996년 전국의 지니계수인 0.2954이나 도시근로자계의 0.2907(통계청, 1998)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2) 총지출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노인가구의 연간 총 지출액의 점유비율과 지니계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총지출 분포를 10분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독

〈표 4〉 노인가구별 연간 총소득의 점유비율과 지니계수

(N=9,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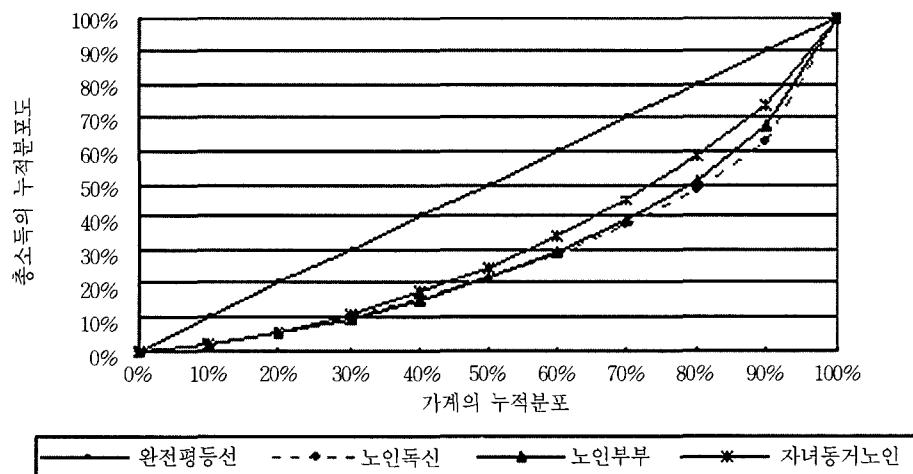
소득계층별 인구비율의 누적	계층별 연간 총소득에 대한 비율의 누적		
	노인독신가구(N=2194)	노인부부가구(N=2540)	자녀동거 노인가구(N=4580)
10%	2.10%	1.84%	1.93%
20%	5.43%	5.09%	5.57%
30%	9.79%	9.45%	10.73%
40%	15.17%	14.86%	17.21%
50%	21.38%	21.52%	24.98%
60%	28.82%	29.48%	34.22%
70%	37.81%	39.04%	45.06%
80%	48.60%	50.93%	58.07%
90%	62.70%	67.41%	74.11%
100%	100.00%	100.00%	100.00%
지니계수 ¹	0.3967	0.3825	0.3239

자료: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¹ 본 연구에서는 이준구(1999)와 박홍립(1997)의 소득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라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수 자체가 상대적 평가의 검증이므로 세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지니계수=(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누적의 합 계층별 연간총소득에 대한 비율 누적의 합)/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누적의 합



〈그림 2〉 노인가구별 총소득의 로렌츠 곡선

신가구의 경우 최하위 10%는 1.4%, 최상위 10%는 약 55.3%를 지출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약 39.5배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상위 10%가 64.3%, 최하위

10%는 1.8%의 지출을 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35.7배였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최상위 10%가 66.6%, 최하위 10%가 약 2%를 지출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33.3배였다.

〈표 5〉 노인가구별 연간지출의 점유비율과 지니계수

(N=9,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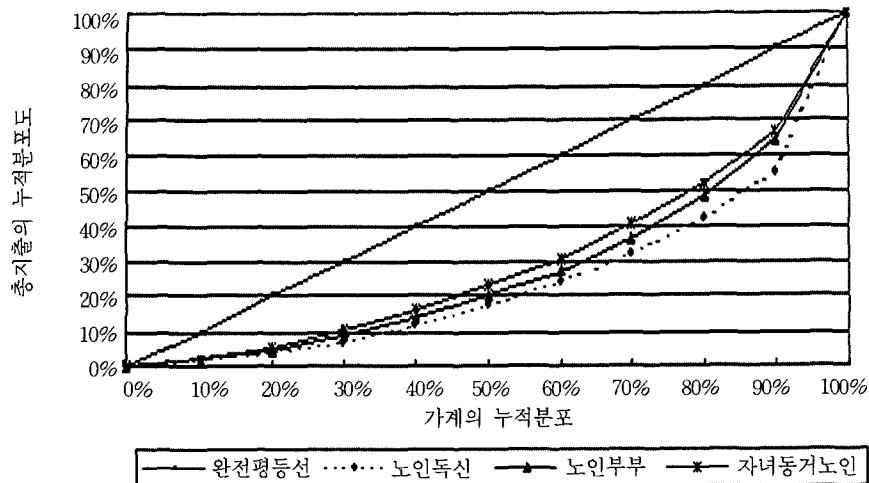
지출계층별 인구비율의 누적	계층별 연간 총지출에 대한 비율의 누적		
	노인독신가구(N=2194)	노인부부가구(N=2540)	자녀동거 노인가구(N=4580)
10%	1.43%	1.83%	2.08%
20%	3.87%	4.91%	5.70%
30%	7.28%	8.90%	10.45%
40%	11.72%	13.92%	16.28%
50%	17.25%	19.98%	23.10%
60%	23.93%	27.37%	31.08%
70%	31.92%	36.58%	40.50%
80%	41.65%	48.29%	51.86%
90%	55.25%	64.33%	66.62%
100%	100.00%	100.00%	100.00%
지니계수1	0.4649	0.4071	0.3679

자료: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¹ 본 연구에서는 이준구(1999)와 박홍립(1997)의 소득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라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수 자체가 상대적 평가의 검증이므로 세집단간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지니계수 = (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누적의 합 계층별 연간총소득에 대한 비율 누적의 합)/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누적의 합



〈그림 3〉 노인가구별 총지출의 로렌츠 곡선

이러한 결과는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에 비해 가계의 지출 규모에 있어 극단적인 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복지수준을 비교할 때, 노인독신가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가구별 총지출액에 대한 지니계수는 노인가구별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 역시 노인독신가구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독신가구의 지니계수는 0.4649이며 노인부부가구의 지니계수는 0.4071로서 자녀동거노인가구의 지니계수인 0.3679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노인독신가구가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노인가구에 비해 가장 불평등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3) 순저축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노인가구의 연간 총지출액의 점유비율과 지니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순저축액 누적 분포를 10분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최하위 10%는 0.13%, 최상위 10%는 약 30%를 보유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약 231배 순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최상위 10%가 45.3%, 최하위 10%는 0.13%를 보유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348배 순저축액을 갖고 있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최상위 10%가 약 53%, 최하위 10%가 약 0.25%를 보유하고 있어 최상위 10%가 최하위 10%의 212배 순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순저축 보유액의 극단적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총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본 세 집단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보다도 그 편포가 매우 큰 것이다.

총소득과 총지출액에서의 점유비율과 지니계수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순저축액에서의 지니계수는 노인독신가구가 0.6933으로 노인부부가구 0.6056과 자녀동거 노인가구 0.5477보다 높다. 즉,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에 비해 노인독신가구의 순저축액에서의 분포가 더욱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총소득, 총지출의 지니계수와 함께 비교할 때, 세 집단 모두 순저축액에서의 지니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의 연구를 토대로 장기적 측면에서 저량의 의미인 총자산이 가계 경제의 복지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에 빗대어 해석한다면, 순저축

〈표 6〉 노인가구별 순저축액(양의 경우)의 절유비율과 지니계수 (N=7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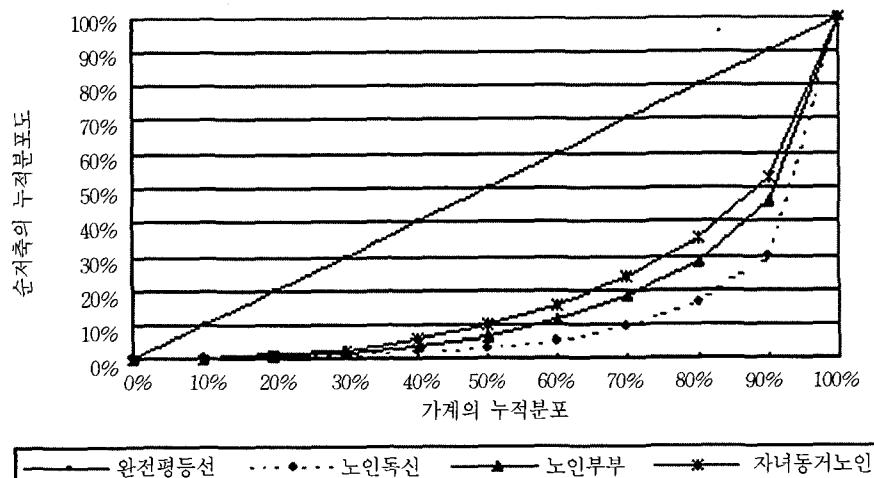
순저축액 계층별 인구비율의 누적	계층별 순저축에 대한 비율의 누적		
	노인독신가구(N=1682)	노인부부가구(N=2038)	자녀동거 노인가구(N=3620)
10%	0.13%	0.13%	0.25%
20%	0.43%	0.63%	1.19%
30%	0.93%	1.77%	2.97%
40%	1.81%	3.84%	5.80%
50%	3.37%	6.87%	9.95%
60%	5.77%	11.64%	15.95%
70%	9.71%	18.50%	24.08%
80%	16.45%	28.25%	35.37%
90%	30.06%	45.30%	53.19%
100%	100.00%	100.00%	100.00%
지니계수1	0.6933	0.6056	0.5477

자료: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¹ 본 연구에서는 이준구(1999)와 박홍립(1997)의 소득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라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수 자체가 상대적 평가의 검증이므로 세집단간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지니계수 = (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누적의 합 계층별 연간총소득에 대한 비율 누적의 합)/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누적의 합



〈그림 4〉 노인가구별 순저축(양의 경우)의 로렌츠 곡선

액을 기준으로 세 집단간의 저량적 경제복지율 비교할 때, 노인가계의 빈곤함을 결정짓는 그 출발선이 어느 집단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3.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상태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자녀동거노인가구와 비교하여 이들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총소득,

〈표 7〉 직업유무에 따른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소득, 지출, 저축, 부채 및 순저축 (단위: 천 원, N=9,314)

		노인독신가구(N=2,194)			노인부부가구(N=2,540)			자녀동거 노인가구(N=4,580)		
		취업(N=628)	미취업(N=1566)	t값	취업(N=1502)	미취업(N=1038)	t값	취업(N=3514)	미취업(N=1066)	t값
총소득	평균	911043	4684.18	-4.13****	19708.50	10842.33	-14.03****	29209.88	16054.94	-24.53****
	S.D.	26656.81	4973.37		21036.42	10415.55		19837.62	13647.34	
	중앙값	6000.00	3600.00		14360.00	7600.00		24922.00	12000.00	
	N	628	1566		1502	1036		3514	1066	
총지출	평균	5316.34	5221.62	-0.24	15719.56	10656.94	-8.40****	20918.43	15061.91	-8.32****
	S.D.	7169.31	10957.03		18971.74	11308.78		23990.19	18789.13	
	중앙값	3941.22	2834.69		10456.58	7238.94		15668.10	10746.78	
	N	628	1566		1502	1038		3514	1066	
순저축 ¹	평균	4547.19	8251.58	4.47****	18418.56	25741.28	3.49****	20504.76	24113.18	2.36*
	S.D.	7098.51	26297.47		37408.94	51484.36		34665.02	40125.17	
	중앙값	2097.00	1050.00		8104.00	8000.00		11532.00	7150.00	
	N	508	1174		1224	814		2772	848	

자료: 통계청, 가구실태조사, 1996.

표본: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

¹ 순저축 = 총저축보유액 - 총부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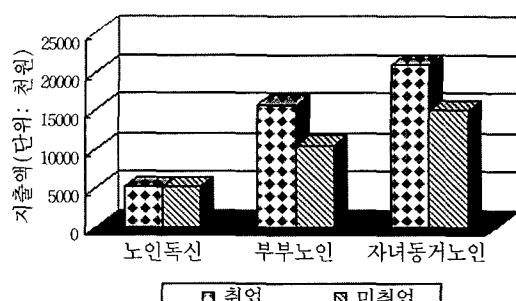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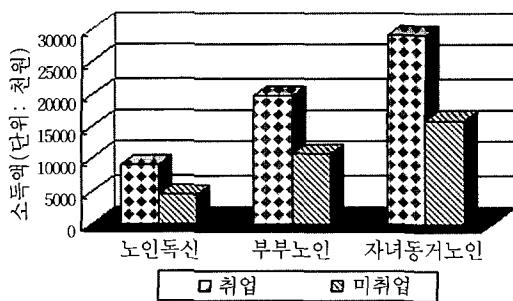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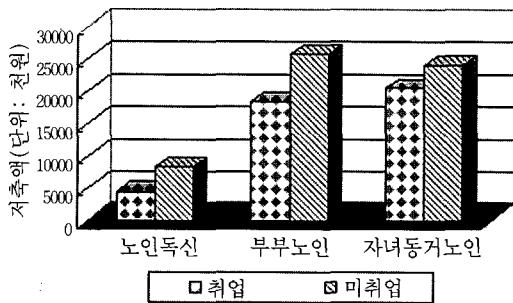
총지출, 순저축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총소득, 총지출, 순저축에서의 취업가구와 미취업
가구의 차이는 노인독신가구의 총지출부분을 제외
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소득액의 경우, 노인독신
가구는 취업자(911만원)가 미취업자(468만원)보다
1.9배 많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취업자(1,971만원)
가 미취업자(1,084만원)보다 1.8배, 자녀동거노인가구 역
시 취업자(2,921만원)가 미취업자(1,605만원)보다 1.8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
가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총지출의 경우, 노인
독신가구는 취업자(532만원)나 미취업자(522만원)간
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함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부부가구는 취업자(1,572만
원)가 미취업자(1,066만원)보다 1.5배 많으며, 자녀동
거 노인가구의 경우는 취업자(2,092만원)가 미취업
자(1,506만원)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총저축에서 총부채액을 제외한 순저축액





<그림 7>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구별 순저축

의 경우, 총소득액과 총지출액에서 외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세 집단 모두 미취업가구의 순저축 보유액수가 취업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집단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즉, 노인독신가구의 순저축액은 미취업자(825만원)가 취업자(455만원)보다 1.8배 많았고, 노인부부가구는 미취업자(2,574만원)가 취업자(1,842만원)보다 1.4배, 자녀동거노인가구는 미취업자(2,411만원)가 취업자(2,050만원)보다 1.2배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노인가구의 경우 미취업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의 경제 상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 소비실태조사」에 포함된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9,31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자 유무를 기준으로 노인독신 2,194가구, 노인부부 2,540가구, 2세대 이상이 동거하는 자녀동거 노인 4,580가구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소득과 지출, 저축과 부채액을 근거로 경제상태를 파악하고,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산출하여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50%이상이었으며, 노인독신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노인가구에 비해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75%이상이 남성인 반면, 노인독신은 90%정도가 여성이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연령도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인독신가구의 학력 역시 평균 7년 정도로 다른 두 집단의 10년에 비해 짧았고, 취업률 또한 29%로 자녀동거 노인가구의 77%와 대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가소유율도 다른 두 집단에 비해(둘 모두 약 79%) 노인독신의 경우 59%로 낮게 나타났으며, 군부거주 가구비율도 노인부부와 자녀동거노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소득과 지출은 노인독신가구의 평균액수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부부단독, 자녀동거 노인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노인독신가구의 소득원천은 주로 이전소득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적 지원은 주로 성인자녀와 사회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석되었다. 지출에 있어서는 노인독신가구는 소득의 88%, 노인부부는 85%,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75%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노인독신가구의 지출은 다른 노인가구보다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 저축과 부채는 둘 모두 그 액수가 노인독신 가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부부노인, 자녀동거노인가구 순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저축과 부채의 차액으로 산출된 순저축액에서는 노인독신가구가 481만원, 노인부부는 1,576만원,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1,458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순저축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순저축액 역시 노인부부의 경우 788만원, 노인독신 481만원, 자녀동거 노인 405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순저축액이 가장 많다. 이는 경제적 상태가 나

은 노인부부의 경우 독립적 주거형태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넷째, 경제적 불평등도와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소득, 지출, 순저축액 중 순저축액의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누적분포가 가장 심하게 편포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가구의 극심한 빈곤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세 집단간 누적분포의 불평등한 모습은 로렌츠 곡선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기수적으로 표현한 지니계수에서는 소득, 지출, 순저축액 모두에서 노인독신가구의 계수가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보다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준 변수간에는 소득보다는 지출에서 지출보다는 순저축액에서의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 매우 불평등한 분배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섯째,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자녀동거노인가구와 비교하여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지출에서 노인독신가구의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 집단 모두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그 액수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순저축액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미취업자가 취업자의 액수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노인가구의 경우 미취업노인에 비해 상대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의 경제 상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과 지출, 장기적 관점에서 저량의 개념으로 파악되는 순저축액을 기준으로 본 노인가구의 불평등정도는 소득, 지출, 순저축액으로 갈수록 그 편포가 크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가구는 그 집단 내에서도 특성에 따라 다른 경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이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 집단 중에는 노인독신가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학력 및 취업율이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여성노인독신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연금 정책은 주로 남성사회를 중심으로 가정의 가장이라 간주되는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여성이 겪는 경제적 빈곤의 위험은 남성보다 크다. 즉,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있을 때와는 달리 경제적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며, 혼자 살게 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성의 경우, 복지 및 연금 정책은 사망한 남편의 사회활동을 기준으로 사망전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 및 연금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노후생활의 적정 생활비 수준을 감안해 상황에 맞게 차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언점을 감안하여 여성노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하고, 이들이 겪게되는 빈곤의 위험을 고려하여 여성노인에게 적정 가계수지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독신가구는 다른 노인가구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불평등하며, 상대적인 지출상태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깝게 들보아 줄 가족이나 친지들의 정서적 도움마저 제공되지 않는다면, 빈곤의 질적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의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정책은 노인의 빈곤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빈곤의 심화를 완화시키려는 측면에서의 성격이 강하다. 연구결과 취업노인은 미취업노인보다 노후대비수준이 낮았고,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취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언한다면, 계속적인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취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이 장려되어야 하며, 미취업상태에서 빈곤에 근접한 건강한 노인을 위하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근로유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고령자들에게 부분제(part-time) 형태로 나마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부록 표 1> 경제상태 및 경제적 불평등 척도의 정의

척 도	정 의
총소득 (단위: 천원/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연금, 사회보장수혜, 수증보조 및 기타)을 합한 한 가구의 1년 총 소득
총지출1 (단위: 천원/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였고 소비지출에는 식비(외식비포함),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에는 담배, 이미용, 장신구, 잡비, 경조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기타교제비 등이 포함되었고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비소비지출이 포함되어 이에 소비한 가구의 1년간 지출로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 함.
총저축 (단위: 천원)	은행권저축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비은행권 저축 및 신탁, 보험권저축, 유가증권, 계불입금, 빌려준 돈이 포함되었고 1996년 11.30 현재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금액이다.
총부채 (단위: 천원)	은행권 부채, 비은행권 부채, 보험권 부채, 빌린 돈, 계탄 돈, 할부 및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값의 잔액이 포함되었고 1996년 11.30 현재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금액이다.

¹ 통계청의 자료는 한 달을 단위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 및 저축과의 비교를 위해 12를 곱하여 연간 총지출액으로 환산하였다.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 의지를 고무시키며, 그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 국민적인 의식강화와 더불어 전일제 노동이 아니더라도 고령자들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경제 상태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 이외에 건강의 문제가 부합되어 있거나, 이 상황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노인을 위하여는 민간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지속적 사회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재가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및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결연 사업 및 경로식당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회,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1999). 한국 노인의 삶.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

-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5조.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4(3), 1-13.
박재간, 모선희, 원영희(1996).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 방향-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4(동계호).
박홍립(1997). 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방하남, 안주엽, 정지연, 박은경, 호정화, 정혜원 (1999).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 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준구(1999). 미시경제학. 서울: 법문사.
정경배(1999. 1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재(1999). 고령화 사회의 노인 소득보장. 한국노년학회 1999년 세계노인의 해 기념 세미나 초록집. 한국노년학회.
통계청(1996a).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

- 통계청(1996b). 장래인구 추계.
-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노동연구원(1999). KLI 노동통계.
- Hurd, M. D., & Shoven, J. B. (1983). *The economics of the elderly. financial aspects of the united states pension system*. In Bodie, Z., & Shoven,
- J. B.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Cheong-Seok, & Rhee, Ka-Oak. (1999). Family, self or state as a desired source of support for the elderly. *한국인구학회*, 22(2), 197-220.
- Sundrum, R. M. (1990). *Income distribu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New York: Routledge.